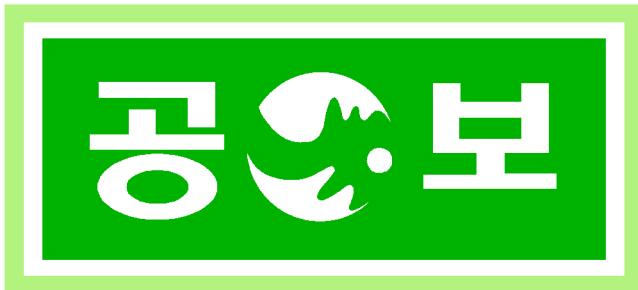


# 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 람	기 관 의 장



제 900 호 2014. 8. 4(월)

## 조례

-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768호[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] ..... 2  
○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769호[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] ..... 5

## 훈령

-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04호[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감사관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] ..... 8  
○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05호[울산광역시 북구 대형공사 구민감시관계도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] ..... 11

## 고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-123호[공유수면 점 · 사용 허가사항 고시] ..... 16  
○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-124호[도로명주소 고시] ..... 17  
○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-125호[도로명주소 폐지 고시] ..... 19

## 공고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-653호[2013년 하반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] ..... 21  
○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-657호[문화예술회관 기간제 근로자 모집 계획] ..... 23

안 내	○ 북구 전자공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☞ 북구 홈페이지( <a href="http://www.bukgu.ulsan.kr">www.bukgu.ulsan.kr</a> )→행정정보→알림마당→북구공보
--------	--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: 기획홍보실(☎241-7125 행정7125)

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이 전 흥



2014년 8월 4일

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768호

###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

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제1항 “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”를 “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문화예술진흥법” 제19조를 “지역문화진흥법” 제22조로 하고, “지역 문화예술”을 “지역문화”로 하며, “문화예술진흥기금”을 “문화진흥기금”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지역문화”란 울산광역시 북구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, 문화예술, 생활문화,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·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.

제3조 중 “문화예술진흥기금”을 “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”으로 한다.

제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“문화예술”을 “지역문화”로

한다.

제10조제1항제1호 중 “문화예술 담당과장”을 “지역문화 업무담당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“문화예술”을 “지역문화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”를 “문화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
제12조제4호 중 “문화예술”을 “지역문화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문화예술 담당국장”을 “지역문화 업무담당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“문화예술 담당과장”을 “지역문화 업무담당과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“문화예술”을 “지역문화”로 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문화예술”을 “지역문화”로 하고, “문화예술 담당자”를 “지역문화 업무담당자”로 한다.

#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설치된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으로,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각각 본다.

**◆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◆****1. 개정이유**

- 2014. 7. 29. 시행되는 「지역문화진흥법」 부칙 제2조에 따라 “문화예술진흥기금”을 “문화진흥기금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**2. 주요내용**

-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정 시행에 따른 용어 및 명칭 변경  
(제명, 제1조에서 제4조까지,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, 제16조)
  - 문화예술, 지역 문화예술 → 지역문화
  - 문화예술진흥기금 → 문화진흥기금
  -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→ 문화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

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이 전 흥



2014년 8월 4일

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769호

###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

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 관한 규칙」”을 “「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) 지하수개발·이용의 허가나 신고 및 굴착공사 행위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은 규칙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산정기준에 따른 산정금액으로 한다.

제5조제1호 중 “「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 관한 규칙」”을 “「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12조의 제목 “(부담금의 산정방법 등)”을 “(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법 제30조의 3”을 “법 제30조의3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
2.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

제13조의 제목 “(부담금 납입절차 등)”을 “(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본문 중 “법 제30조의 3”을 “법 제30조의3”으로 하며, “「지방세 법 시행규칙」 제6조 “별지 제3호서식(전산용 2)”에 따른 납부고지서”를 “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 및 제56조와 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」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(전산용1)의 납부고지서”로 한다.

제14조 중 “100분의 5에 해당하는”을 “100분의 3에 상당하는”으로 한다.

제17조 중 “영 제44조제3항 별표 8”을 “영 제44조 별표 7”로 하고,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 다만,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◆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◆****1. 개정이유**

- 지하수개발·이용의 허가나 신고 및 굴착공사 행위신고 시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산정기준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.

**2. 주요내용**

- 가. 지하수개발·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산정기준 개정(제4조)

**【현행】**

-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초과: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
-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: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

**【개정】**

-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

- 나. 상위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 조정(제14조)

**【현행】**

-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

**【개정】**

-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

- 다. 그 밖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(제12조, 제13조, 제17조)

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감사관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 
발령한다.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전용



2014년 8월 4일

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04호

###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감사관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

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감사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-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【별지 제1호서식】

&lt;전 면&gt;

NO.	
명예구민감사관증	
사 진	성 명 :
	생 년 월 일 :
위 사람은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감사관임을 증명함.	
년 월 일	
울산광역시북구청장 인	

가로 8.5cm, 세로 5.5cm (사진 가로 2.5cm, 세로 3cm)

&lt;후 면&gt;

주의사항
1. 이 증을 휴대한 명예구민감사관은 구민의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, 구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함으로 관계기관에서는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. 2. 이 증을 휴대한 명예구민감사관 또는 직무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홍보실(☎000-0000)로 문의 바랍니다. 3.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색상 : 노란색

**◆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◆****1. 개정이유**

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의2(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)의 규정이 2014. 8. 7.부터 시행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(명예구민감사관증) 기재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기 위하여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**2. 주요내용**

- 명예구민감사관증 기재내용 변경(별지 제1호서식)
  - 주민등록번호 → 생년월일
  - 기타 용어 정비 등

울산광역시 북구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제도 운영 규정 전부개정  
규정을 이에 발령한다.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이 전 흥



2014년 8월 4일

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05호

### 울산광역시 북구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제도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

울산광역시 북구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제도 운영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# 울산광역시 북구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제도 운영 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시행주체가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하여 주민을 공사의 시공, 준공검사 등 전 과정을 직접 감시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대상)** 이 규정의 적용대상 대형공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.

1. 총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및 특수공사
2.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
3. 총 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
4. 문화유적의 보수공사

**제3조(감시관의 위촉)**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대형공사 착공 전에 5명 이내의 대형공사 구민감시관(이하 “감시관”이라 한다)을 위촉하여야 한다.

② 감시관의 임기는 해당 공사의 감시관 위촉일부터 준공검사 종료 시까지로 하고 준공되면 자동 해촉된다.

③ 감시관은 해당 공사의 시행부서에서 사업시행 전에 선정하여 기획홍보 실장에게 위촉을 요구하여야 한다.

④ 시행부서는 감시관에게 구민감시관증 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하고 감시관은 직무수행 시 구민감시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.

**제4조(감시관의 자격)** ① 감시관의 자격은 위촉일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

1. 토목, 건축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2. 토목, 건축 등 건설공사 또는 문화유적 보수공사 등 관련 직무에 종사 하였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
3. 해당 공사의 이용관계, 부지편입 등의 직접적 관련이 있는 주민 또는 단체의 대표로서 그 주민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이 있는 사람
4. 지역유지로서 덕망과 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시관이 될 수 없다.

1. 해당 공사의 수주업체의 임직원 또는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2. 해당 공사의 시공회사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의 임직원 또는 퇴직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3. 건설공사 관련 단체·조합 등 이익단체의 임직원
4. 기타 구청장이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람

**제5조(감시관의 임무 등)** ① 감시관은 이 규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공사시행 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1. 기본설계 시: 지리적 상황과 여건에 대한 의견 제시
2. 공사시행 시: 시공의 적정성, 안정성과 주민불편 및 부실공사 사전방지 를 위한 현장위주의 감독

3. 준공검사 시: 설계도서와 일치 여부 및 민원사항 해결 여부 등의 검사

입회

② 해당 공사의 시행부서 및 시공회사는 감시관의 임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의견제시)** ① 감시관이 해당 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문제점 또는 시정·개선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해당 공사의 감독관에게 즉시 이의 시정·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감독관은 감독일지에 이를 명시하여야 하고, 감시관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③ 감시관은 제1항의 요구가 시정되지 않을 시, 기획홍보실장에게 서면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④ 기획홍보실장은 감시관의 요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수당과 여비)** 감시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회의 참석, 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【별지 제1호서식】

(앞 면)

<p>No. _____</p> <p>구민감시관 증</p> <p>성명 : _____</p> <p>생년월일 : _____</p> <p>주소 : _____</p> <p>감시대상공사 :</p> <p>위 사람은 「울산광역시 북구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제도 운영 규정」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구민감시관임을 증명함.</p> <p>년 월 일</p> <p>울산광역시 북구 청장</p>	
--	--

(뒷 면)

<p>주의사항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이 증은 앞면 감시대상공사에 한하여 위촉일부터 준공 검사 종료 시까지 유효함.</li> <li>이 증에 의한 구민감시관은 「울산광역시 북구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제도 운영 규정」 제6조에 따라 의견제시를 할 수 있으며, 시행부서 및 시공회사는 임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.</li> <li>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.</li> <li>이 증을 휴대한 구민감시관 또는 직무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시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홍보실(☎ 000-0000)로 문의 바랍니다.</li> </ol>
--

**◆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◆****1. 개정이유**

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의2(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)의 규정이 2014. 8. 7.부터 시행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(명예구민감사관증) 기재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,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규정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.

**2. 주요내용**

- 구민감시관증 기재내용 변경(별지 제1호서식)
  - 주민등록번호 → 생년월일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 - 123호

## 공유수면 점·사용 허가사항 고시

「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
2014년 8월 4일

#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#### □ 고시내역

허가 년월일	허가 번호	피허가자		점용장소	면적 (m <sup>2</sup> )	허가기간	점용목적	비 고
		주 소	성 명					
2014. 7.17.	2014 - 18	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84	울산지방 해양항만 청장	북구 정자동 425-13 지선 북구 어물동 1331-1지선	24,239	2014.7.20. ~ 2016.10.19.	강동해안 일대의 연안취식 방지를 위한 공식물 설치	조건부 허가
2014. 7.28.	2014 -19	울산광역시 북구 산성로 40, 522호	울산지식 산업센터 최현홍	북구 산하동 367-16 지선	75	2014.7.28. ~ 2014.8.31.	하계휴양소 설치 운영	조건부 허가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 - 124호

## 도로명주소 고시

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4년 8월 4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### 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2길 9외 8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(별지참조)			

\*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[www.bukgu.go.kr](http://www.bukgu.go.kr)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### 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4. 8. 4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### 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### 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##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

순번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부여시유	도로명 고시일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충신지구 58-91	울산광역시 북구 충신2길 9	2014-08-04	법정동 명칭을 사용하여 부여하였다.	2013-12-30	
2	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1009	울산광역시 북구 모들호수산업단지로 8-1	2014-08-04	모들호수산업단지로에 조성된 도로로 명을 부여하였다.	2010-04-27	
3	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546-1	울산광역시 북구 양정7길 3	2014-08-04	양정이란버드나무가 많아서 어진이를이며 현재의 이지역 대지명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이름으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01-05	
4	울산광역시 북구 전장명촌지구 1118-11	울산광역시 북구 명촌23길 71	2014-08-04	옛지명이란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명을 부여하였다.	2004-12-27	
5	울산광역시 북구 시례동 산86-6	울산광역시 북구 성례1길 40-12	2014-08-04	기존지명인 성례마을에 위치하여도로명 부여하였다.	2004-08-09	
6	울산광역시 북구 기대동 432	울산광역시 북구 기동길 13-2	2014-08-04	옛지명이란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다.	2004-08-09	
7	울산광역시 북구 대인동 34-1	울산광역시 북구 대인1길 201-2	2014-08-04	예전지명인 대인명칭을 사용하면서도로명 부여하였다.	2004-08-09	
8	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171	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795-29	2014-08-04	이지역의 지형에 따라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9-08-20	
9	울산광역시 북구 청평동 703	울산광역시 북구 원시지방길 71-26	2014-08-04	원자마을 지방을 지나는 길이라 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08-09	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 - 125호

##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4년 8월 4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### 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로 11외 11건

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 사유
(별지참조)		

\*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식과 (☎052-241-7583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[www.bukgu.go.kr](http://www.bukgu.go.kr)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### 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4. 8. 4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### 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## 도로명주소 폐지| 고시| 조서

연번	도로명주소	종전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사유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로 11	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234-23	2014-08-04	건축물대장 말소	
2	울산광역시 북구 중리2길 13	울산광역시 북구 엠포동 511-2	2014-08-04	건축물대장 말소	
3	울산광역시 북구 오치골5길 21	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484-115	2014-08-04	건축물대장 말소	
4	울산광역시 북구 수동안길 14-2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639-1	2014-08-04	건축물대장 말소	
5	울산광역시 북구 친설1길 29-4	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191-1	2014-08-04	건축물대장 말소	
6	울산광역시 북구 명촌6길 26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병촌지구 71B 6-2L	2014-08-04	건축물대장 말소	
7	울산광역시 북구 오치골5길 19	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484	2014-08-04	건축물대장 말소	
8	울산광역시 북구 수박골1길 27-3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353	2014-08-04	건축물대장 말소	
9	울산광역시 북구 엠포로 569	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625-1	2014-08-04	건축물대장 말소	
10	울산광역시 북구 제내5길 8	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745-107	2014-08-04	건축물대장 말소	
11	울산광역시 북구 이룸1길 28-2	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58-13	2014-08-04	건축물대장 말소	
12	울산광역시 북구 속심이길 18-5	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45	2014-08-04	건축물대장 말소	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 - 653호

## 2013년 하반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(환경부고시 2014-56호)에 따라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한 참여자에게 2013년 하반기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수령계좌 제출 및 지급신청을 축구하였으나, 주소불명 및 수취인 미거주 등 사유로 송달 불가하거나, 현재까지 수령하지 않은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 합니다.

2014년 7월 29일

#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제 목 : 2013년 하반기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공시송달
2. 근거법규 :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(환경부고시 제 2014-56호)
3. 공고기간 : 2014. 7. 29. ~ 2014. 8. 12.(15일간)
4. 공고대상자 및 내역 : “붙임”
5. 탄소포인트제(인센티브) 문의 :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위생과(☎052-241-7763)
6. 공고기간 내 탄소포인트 인센티브(현금) 수령을 위한 주소, 계좌번호 등 인센티브 지급신청이 없을 경우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(환경부고시 제2014-56호)에 따라 지급대상자 명의로 기부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.

붙임 :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미수령자 현황 1부.

## ○ 2013년 하반기 틴소포인트 인센티브 미수령자 현황

ID	이름	지급인센티브(원)	주소	가입일
	3건	30,000		
BBBBSS77	김정화	17500	울산광역시 북구 상방로 160, ***동 ***호(연암동, 벽산늘푸른아파트)	2012-05-16
lggin247	박성호	6000	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4길 17, ***동 ***호(연암동, 엘진진로아파트)	2012-12-20
SSSWon313	김종화	6500	울산광역시 북구 연포로 685, ***동 ***호(영포동, 영포성원상태빌)	2012-12-19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 - 657호

## 문화예술회관 기간제 근로자 모집 계획

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기간제근로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.

2014년 7월  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### 1. 모집인원

근무지	인원(명)	업무	근무기간
북구 문화예술회관	1(여)	놀이방 운영 및 문화예술회관 민원 안내	2014. 9. 1. ~ 2014. 12. 31. (4개월간)

### 2. 모집방법

- 가. 서류접수 : 2014. 8. 4.(월) ~ 8. 15.(금)(12일간)
- 나. 서류심사 : 2014. 8. 18.(월)
- 다. 면 접 : 2014. 8. 25.(월) 14:00(예정) 단,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

### 3. 응시자격

현재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
### 4. 모집일정

가. 접수일정

- 1) 기 간 : 2014. 8. 4.(월) ~ 8. 15.(금) 09:00~18:00
- 2) 장 소 : 북구문화예술회관 1층 사무실
- 3) 접수방법 : 개별신청(우편접수 불가)

**나. 시험일정**

- 1) 서류심사 : 2014. 8. 18.(월)[합격자 개별 통지]
- 2) 면접시험 : 2014. 8. 25.(월) 14:00 예정, 북구문화예술회관 1층 다목적실

**5. 최종 합격자 발표 : 2014. 8. 26.(화) 개별 유선 통지****6. 제출서류**

- 가. 신청서 1부
- 나. 주민등록등본 1부
- 다. 자격(면허)증 사본 1부
- 라.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
**7. 근로조건**

- 가. 근무시간 : 주 40시간
- 나. 보수
  - 1) 기본급(일당) : 41,680원
  - 2) 수당 : 가족수당, 주차수당, 연차수당

**8. 응시자 유의사항**

- 가.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나. 근무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중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재직한 자는 재직 기간에 따라 근무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(11개월이상 근무 불가)
- 다. 문의처 :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(☎ 241-7352, 7353)

(붙임 1)